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1 개선대상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비고
PVC재질의 포장재 (폴리염화비닐라덴 포함)	PVC재질을 사용하여 접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이 붙이는 표지를 포함)를 포함
유색 PET병	
열압컬러성 수용액 분리되지 않는 접(접)착제가 사용된 PET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

2 사용금지 적용 예외(사용가능)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고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포장재

3 시행일 : '19.12.25.

※ 별도의 계도기간 없음

4 개선 및 중단명령(환경부)

의무생산자가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선명령 대상

→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내 미개선 시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혹은 중단명령을 같은하는 과징금 부과



5 관련규정

- 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제9조의3, 제36조 및 제41조
- 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및 규칙 제3조의3 및 제3조의4
- 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67호, 2020.02.06)
- 라.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2019.12.24.)
- 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2019.12.30.)
- 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39호, 2020.02.17.)
- 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환경부, 2020.02.14.)

6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연락처

구분	전화	관할구역
수도권동부 지역본부	(031) 590-0654, 0656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서부 지역본부	(02) 3153-0570~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051) 366-3770~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권 지역본부	(042) 939-2336~9, 4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호남권 지역본부	(062) 949-0314, 0747~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 590-7545, 1, 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지사	(033) 240-9542, 7	강원도
전북지사	(063) 279-0835~8	전라북도
충북지사	(043) 219-6442, 4	충청북도
제주지사	(064) 725-6548	제주특별자치도

www.iepr.or.kr

자연 사랑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 : 자원의 질악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8.12.24. 제정·공포, '19.12.25. 시행]

1 시행배경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되어 폐기물 회수·선별·재활용 과정으로 유입



재활용률 저하·재활용비용 증가·재활용제품 품질 저하·
유해물질 발생 등 문제 유발



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

2 평가제도 개요

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품목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재
평가항목	몸체/라벨 등에 대해 단일재질 및 단일색상 여부, 라벨의 분리 용이성 등 재활용용이성을 평가
평가등급	4개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미이행시 조치사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3 평가대상 포장재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구분	대상 제품	포장재 예시
종이팩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용품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	
유리병		
금속캔 (알루미늄, 철)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원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 비대상

계도기간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계도기간 내 포장재 재질·구조 신청을 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자체평가
(의무생산자)

평가 확인
(한국환경공단)

평가 결과
표시

1 자체평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 방법에 따라 재질·구조 단위로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단,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증빙서류 제출 예외)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모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에서 신청 가능

2 평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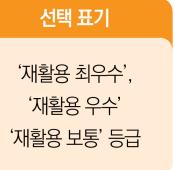
- 자체평가 등급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평가확인서 발급
- 증빙서류 검토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통보(10일 이내 보완)

3 평가 결과 표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

PP
두께 : HDPE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 단, 평가결과 표시 예외 포장재(‘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제5조)는 제외

제도 관련 FAQ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
[제도소개 →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 제도관련 FAQ]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